## 민법상불법침해행위의 분류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법행위는 크건작건 국가와 인민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되고 혁명과 건설에 해독을 끼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몷게 인식시킴으로써 법을 어기지 말고 성실 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1폐지)

위법행위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어기는 행위로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크건작건 국가와 인민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해독적후과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민들은 우리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지켜야 한다.

공화국민법에서 불법침해행위는 법이 보호하는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의 인신적 및 재 산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이다.

공화국민법에서 불법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목적은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민법적규제의 목적에 맞게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호하려면 민법상불법침해행위를 그 형태에 따라 옳게 분류하여야 한다. 그것은 민법상불법침해행위의 형태에 따라 민사책임조건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기때문이다.

민법상불법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민법상불법침해행위에는 무엇보다먼저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있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로써 다른 당사자의 민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책임을 부담하는자와 침해행위를 하는자가 동일한 당사자라는것이다. 직접적인 침해행위에서는 책임을 부담하는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한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행위자의 주관적허물과 서로 구별하여보아야 한다. 비록 허물과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밀접히 련관되여있고 또 일반적으로 일정한 허물에 기초하지만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조건으로서의 허물요건에 관심을 돌리는것은 가해자의 내심적인 고의나 과실, 민사책임부담의 기초로서의 허물이다. 직접적인 침해행위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의 객관적측면을 론의한다. 여기에는 침해행위와 법규범과의 관계, 침해행위와 가해자와의 법적인 의무관계, 침해행위와 법적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민사적권리와 리익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지적해야 할것은 모든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허물있는 심리상태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무과실책임원칙에따라 인정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허물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자면 행위자의 민사책임능력과 련관시켜 보아야 한다. 오직 민사책임능력이 있는자가 한 침해행위만이 민법상의 직접적인 침해행위 를 구성할수 있으며 민사책임능력이 없는자가 한 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그것은 민사책임능력이 없는자에게는 민사책임을 지울수 없기때문이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측면에 따라 허물에 기초한 침해행위와 허물에 기초하지 않은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으며 행위자의 수에 따라 단독적인 침해행위와 공 동적인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의 적극성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침해행위와 소극적인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으며 침해하는 민사권리와 리익의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할수 있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우선 행위자의 허물에 기초한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허물에 기초 하는 침해행위와 허물에 기초하지 않은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다.

허물에 기초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다시 고의적인 침해행위와 과실적인 침해행위 로 구분할수 있다.

고의적인 침해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결과를 목적(직접고의)하였거나 허용(간접고의)한 주관적인 잘못으로 진행한 침해행위를 의미하며 과실적인 침해행위는 법에 위반된다는것을 응당히 알았어야 하고 예견하였어야 하겠는데 모르고있었거나 예견하지 못한 주관적인 잘못으로 진행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허물에 기초하지 않은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법이 행위자에게 허물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우도록 규제한 즉 무과실책임원칙에 기초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허물에 기초하고있지만 일부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허물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에서 가해자의 허물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허물과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또한 행위자의 수에 따라 단독적인 침해행위와 공동적인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다.

불법침해행위자가 자기 개인의 단독행위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경우 단독적인 침해행위라고 한다. 이때 행위자는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적인 침해행위라고 한다. 이 경우 전체 가해자는 응당 법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또한 행위자의 적극성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침해행위와 소극적 인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다.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면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 제3자의 민사 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지 말데 대한 소극적인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 법은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민사적권리와 리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구조 등의 적극적인 의무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있다.

소극적인 의무를 지니고있는자가 적극적인 행위로써 제3자의 인신이나 재산에 손해를 준경우에 적극적인 침해행위라고 한다. 실례로 어떤자의 재산과 인신에 대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방해 또는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의무를 지니는데 이를 위반하고 어떤자의 재산과 인신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다.

적극적인 의무를 지니고있는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인신이나 재 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소극적인 침해행위라고 한다.

당면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있는자(례하면 소방대원이나 공공수영장의 구조대원)는 흔히 일반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적극적인 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러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있는자들은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응당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다.

소극적인 의무는 일정한 조건에서 적극적인 의무로 전환될수도 있다. 만일 소극적인 의

무가 적극적인 의무로 전환된 경우 그로 인한 적극적인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면 소극적 인 침해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또한 어떠한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물적재산 권에 대한 침해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인신에 대한 침해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물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와 리용물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채권 담보와 관련한 물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는 저작소유 권에 대한 침해와 발명이나 특허와 같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포함된다. 인신에 대한 침해에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신분권에 대한 침해가 포함된다.

직접침해행위는 또한 그 대상이 가지고있는 위험성정도에 따라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와 보통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로도 구분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직접적인 침해행위들은 위험성을 띠고있다. 손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는 제3자의 권리나 리익은 현실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띠고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정도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와 보통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으며 그 위험성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원칙에서 법적책임을 지울수 있다.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제3자의 인신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자는 응당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수 있다. 이것은 위험한 대상을 다루는데서 언제나 최대한 각성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취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통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경우 침해행위자는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을 진다. 즉 과실이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조건으로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보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보다 엄격한 책임 즉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통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의한 침해행위가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허물책임을 지워야 한다.

민법상불법침해행위에는 다음으로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이 남의 민사적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침해 자가 그로 인한 재산상손해를 본자에게 손해보상과 같은 민사책임을 지도록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원칙적요구이다.

민법은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뿐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제3자가 남에게 입힌 재산상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지도록 규제하고있다. 이러한 민사책임이 바로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보상의무자)가 제3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를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라고 한다.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에서 제3자로는 일반적으로 개별적공민이 나서며 례외적으로 법인도 나설수 있다. 여기에서 제3자는 민사책임을 지는자나 피해자를 의미하지 않으며 민사책임을 지는자와 특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고있는자(례하면 미성인자녀나 후견받는자, 법인에게 속한 개별적성원 등)를 말한다. 이러한 제3자에는 행위능력이 있는자뿐아니라 행위능력이 없는자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를 행위능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행위능력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로 구분할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에는 우선 행위능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다.

행위능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는 민사책임을 지는자가 아닌 민사책임능력을 가진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권리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행위능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 야 한다.

첫째로, 행위를 수행하는자는 제3자로서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자나 피해자가 아니여야 하며 그 3자는 해당한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둘째로, 그 행위가 손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여 야 하며 행위자체가 위법성을 띠여야 한다. 그리고 제3자가 가해행위를 수행할 당시 그의 허물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법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 즉 행위자에게 허물이 있을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허물이 없어도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민사책임능력을 가진자가 해당한 주의의무리행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수 없었다면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의 행위는 그에 속한 성원들의 직무상행위를 통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법인은 자기에게 속한 성원이 직무상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에는 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다.

행위능력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는 민사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아닌 민사책임무능력자가 피해자의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행위능력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 야 한다.

첫째로, 행위를 수행한자는 제3자로서 민사책임을 지는자나 피해자가 아니여야 하며 그 3자에게 민사책임능력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 그 행위가 피해자의 법의 보호를 받는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여야 하며 행위자체가 위법성을 띠여야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에서는 행위를 수행한자의 주관적인 허물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행위를 수행할 당시 행위자의주관적허물에 관계없이 행위자체가 위법성을 띠고있으면 침해행위를 구성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침해민사책임을 지는 경우를 공화국손해보상법 제13조에서는 《행위무능력자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라고 규제하고있다. 부모나 후견인은 법에 따라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교양과 감독통제의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행위무능력자가 다른 사람의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통제를 잘못한것으로 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다. 이것은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통제의 수단이 완전히 단절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의무는 그를 통제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져야 한다.

우리는 민법상불법침해행위의 분류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법을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서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